

헛갈리는 비율/개념 총정리

구분	일수	비고
실업 급여 재심사 청구	90일 이내	수급 자격의 불인정 시
구직 급여 신청 대기	7일간	이후 매 1-4주마다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지방노동위 판결 불복시 재심 신청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
중앙노동위 판결 불복시 재심 신청	15일 이내	중앙노동위원장을 대상으로 소송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시정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비정규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의 차별 시정	6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쟁의 조정 기한	일반사업 - 10일 공익사업 - 15일	
노사협의회 정기 개최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노동 조합 총회	매년 1회 이상	
긴급조정시	30일간 파업금지 즉시 쟁의행위 중지	

구분	기준	비율	비고
구직급여	평균임금	60%	고용보험 피보험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 구직중인 상태일 경우 120-27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음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3일초과 취업 x
연장 근로 수당	하루 8시간 초과시(성인기준)	50%	기본 시급의 1.5배 지급
야간 근로 수당	밤 10시 - 오전 6시	50%	기본 시급의 1.5배 지급
휴일 근로 수당	휴일에 근로시	50%	기본 시급의 1.5배 지급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개근시	(1주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40시간 까지만 인정
퇴직금	1주 15시간 이상 + 1년이상 근무시	1년당 평균임금의 30일분	2년 = 평균임금 * 60일 퇴직 후 14일 이내 제공

구분	조건	비고
연차유급휴가	1) 5인이상 사업장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	1년 미만 근로시 - 1달 개근 1일 휴가 1년 이상 근로시 - 1년 80% 개근시 15일 3년 이상 근로시 - 15일 + 2년당 +1일 (최대 25일)
퇴직금	1) 1년 이상 근무시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쟁의 행위	1) 노동조합 과반수의 찬성 2) 단체교섭의 결렬 3)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연소근로자의 휴일/야간 근무	본인의 동의 + 고용노동부의 인가	
현장실습생	1일 최대 1시간 연장 (1일 8시간 근무 가능) 휴일/야간 실습 불가	
근로계약서의 교부	각 2부 (사용자, 근로자)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후견인의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1/2이상 남김 12개월 이상 고용시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기관 장의 지시	
상병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구직 활동을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제공받음 (재취업 활동 의무 x)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근로복지공단
장해/유족 '특별' 급여	장해 1-3급 또는 사망이 사업주의 귀책 사유시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를 대신하여 지급